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. 5. 21 선고 2018가단382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변론 종결 2019. 4. 30

판결 선고 2019. 5. 21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설치된 담장 석축옹벽을 철거하고, 위 담장 석축옹벽 위에 식재된 생나무 울타리 및 수목을 수거하고,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점을순차로 연결한 선내 "가" 부분 97㎡를 인도하고,

나.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, 8,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설치된 담장 석축옹벽을 철거하고, 위 담장 석축옹벽 위에 식재된 생나무 울타리 및 수목을 수거하고, 별지 도면 표시 7, 8, 9, 10, 7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나" 부분 27㎡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,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원고는2019. 4. 10.자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2012. 2.23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. 8. 17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 자이다.

나.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익산시 D 대 139㎡의 소유자인 피고 B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담장 석축옹벽을 설치하고,그 담장 석축옹벽 위에 생나무 울타리 및 수목을 식재하였으며,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선내 "가" 부분 97㎡를 불법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다.

다. 피고 C도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익산시 E 전 314㎡의 소유자인데,이 사건 토 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, 8,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담장 석축옹벽을설치하였고,그 담장 석축옹벽 위에 생나무 울타리 및 수목을 식재하였으며,이 사건토지중 별지 도면 표시 7, 8, 9, 10,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나" 부분 27㎡를 불법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다.

라.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불법으로 점 유·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각 철거,수목 등의 수거, 불법 점유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한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히: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나.피고 C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조유진

별지